



□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Q A 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 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②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③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④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⑤ 카메라 렌즈
- ⑥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⑦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 ⑧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⑨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⑩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비고

Q A 2.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1]

Q A 3.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제2조

Q A 4.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 및 판매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2

Q A 5.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비고

Q A 6.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 입니까?

시험·측정용 계측설비, 산업용 설비는 적합성평가 대상(자기시험 적합등록)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3]-2호

**Q A 7.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제2조제1항제7호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순 모터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Q A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데 왜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전파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간섭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2

【대상 기자재 예시】 USB/건전지(충전지 포함) 작동 선풍기, 면도기, 맷사지기, 보풀제거기, 이발기 등

Q A 9.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채굴용 컴퓨터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6호

Q A 10.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이며, 기자재 외부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컨버터) 또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 컴퓨터가 아닌 타 기자재에 내장되는 전원공급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17호

Q A 11. 전구,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전원공급장치, 안정기 등의 전자회로가 포함되지 않은 전구 및 LED모듈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

Q A 12.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앰프를 내장하지 않은 스피커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스피커들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 ① 앰프 내장형 스피커
- ②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 연결되는 스피커
- ③ 블루투스 스피커
- ④ 진동 기능을 가진 (게임용) 스피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별표2]-3호